

제177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임시회>

#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조례 1건)

거창군의회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6
----------	-----------

제출연월일	2011. 8. 24.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외 3명

## 1. 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군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

나. 공사 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토록 함(안 제4조)

○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여건을 감안 공사금액이 1억원 이하라도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음

다. 공사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내게함(안 제5조)

○ 군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내도록 하였음

라. 읍·면장에게 공사시행을 통보함(안 제6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함

마. 공사현장방문 및 부실시공 확인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공사현장 방문하고 부실시공 등이 있을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작성 보관토록 함

바. 군수는 기획감사실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함(안 제9조)

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군수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 공사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

아. 명예감독관 위촉규정을 둠(안 제13조)

- 군수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공사안내 표지판 적정게시, 군민 불편사항 등을 감시토록 함

자.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16조)

- 군수는 각종 공사 시행 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특히,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준공 표지석”을 설치토록 함

카. 명예감독관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명예감독관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마련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2조의3, 제33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담당·법무통계담당), 건설교통과

라.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수행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도 지역여건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공사 근절서약서)** 군수는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감독)**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 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현장 확인)** ①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 확인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그 밖에) 할 때에는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명예감독관이 시공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준공검사 실시)** ① 군수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흡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기술자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군수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제14조(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준공처리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공공 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이 없을시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준공 표지석을 설치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7조(수당 등)** 명예감독관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용역)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회사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지도일지)

### ○ 공사개요

공사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금액)	공사 기간	시공업체 (대표자)	계약 방법	비 고 (공사내용 및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령일자)

### ○ 공사현장 확인내역

일 시	확 인 내 용	조 치 사 항	확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용				
증빙서류				
비고				
<p>「거창군 부실방지 방지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p>거창군수 귀하</p>				